제298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제1차 운영위원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0, 11, 2,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

I. 결의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가. 제 안 자 : 김인호 의원 외 108명

나. 제 안 일 : 2020. 10. 30

다. 회 부 일 : 2020. 11. 2

라. 의안번호 : 2043

2. 제안이유

- 정부는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제20대 국회에 제출했으나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정부가 신속하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다시 제출했고, 국회에서도 행정 안전위원회 법안 상정, 법안소위 심의 등이 이뤄졌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된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과 숙원과제 해결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금번 정기국회 기간 내 통과, 재적의원 총수 범위 내에서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도입 범위에 기초의회를 포함해 줄 것 등을 국회와 중앙정부 등에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헌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이송처 :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Ⅱ.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선희)

1 결의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결의안은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주요 숙원과제 해결을 통해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 기간 내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촉구하고자 제안된 것임.

2 결의안에 대한 검토

- 현재 우리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반은 1948년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과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한국전쟁과 5·16 군사정변을 포함한 여러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그 정신을 이어오고 있음.
- 특히, 5·16 군사정변에 따라 지방자치가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으나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실로 1991년 지방의회 선거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전면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했고, 내년이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함.
- 지역과 주민을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는 날로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왔고, 여러 제도적 한계 속에 서도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한 건강하고 생산적인 감시자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해 왔음.
- 다만, 1949년 제정된「지방자치법」은 나날이 변화해온 지방행정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취하도록 한 현재의 기관분리형 지방자치 제도는 사실상 强단체장 弱

- 의회 구조로 고착화 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약하고, 지방의회의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데 여러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분권형 개헌'과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으며, 제20대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지방의회 위상과 역할의 강화를 기대했으나 활발한 논의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됐으며, 제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관련법안이 다시 제출되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의가 진행중임.
- 지방자치법 개정논의가 고착 상태에 빠질 때마다 전국 지방의회는 지속적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을 포함해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역량 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의 도입을 정부와 국회 등에 요구해 왔으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결에 따라 2018년 10월 전국 지방분권 TF를 구성해 지방분권 결의대회 개최와 권역별 토론회, 관계 기관 건의 등의 활동을 지속 하고 있음.
- 특히, 서울시의회는 2016년 지방분권 TF 출범을 시작으로 수 차례 관련 토론회와 공청회, 기자회견, 전문가 좌담회 등을 열어 실질적 지방분권에 대한이해와 설득에 앞장서 왔으며 2011년 이후 10차례 가까운 지방자치법 개정을요구하는 건의안과 결의안을 의결하기도 했음.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결의안 의결 내역〉

일 시	안 건 명
2011. 4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2011.11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법」등 개정 촉구 건의안
2012.12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2014.11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2014.11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2014.12	국가위임사무의 단계적 폐지와 지방의회의 조직·인력 편성에 대한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2015.11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2017. 4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2018. 8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및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수정 촉구 결의안

- 과거 정부와 국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위상정립 요구에 대해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선행조건으로 내걸기도 했으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공감하고 있을 만큼 지방 의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가 높아지고 있음.
-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방역의 성공 과정에서 지방의 역할에 대해서도 깊히 공감하고 있음1).
- 본 결의안은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앞두고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와 지방의원 정수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인사권 독립, 수평적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보장을 요구하고 있음.
-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인사권 독립 보장을 통한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이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수평적 분권의 필요성을 고려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변화된 국민의 기대와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결의안의 적시성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1) 2020.10.29.} kbs등 보도(지방 4대 협의체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3 종합 의견

-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기울어진 지방분권 상황을 개선해 수평적 분권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지방의회의 요구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음.
- 국가 경쟁시대에서 벗어나 글로벌 도시경쟁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 필요성이 증대되고, 지방의회가 이런 변화된 환경에 따른 건강하고 합리적인 감시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요구 들을 담은 결의안을 취지에 공감하며 그 시기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정부와 국회가 이런 요구들에 신속히 응답할 것을 촉구함.